

꺼지는 노동자 생명안전, 지켜보겠다는 노동부

위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 “중대 재해기업 처벌, 노동자 생명 지키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대책 마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4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법 개악 요구는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매일 일곱 명씩 매년 2,400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재난이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10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를 위해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생명·안전 관련 업무 구체화와 직접 고용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와 산재 발생 사업주 엄중 처벌 등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적대다 지난 3월 5일 ‘중장기 검토’ 니 ‘권고안 이행 여부 검토’ 니 하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노동부는 “▽도급 금지 범위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생명안전업무 기준은 노사 의견이 참여하니 지켜보겠다. ▽산재 발생 사업주 처벌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노동부, “산재 발생 사업주 처벌 ... 아직은”

대책위는 노동부 답변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라는 권고이다. 노동부는 문제가 있는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가 죽는 상황을 보고 나서 개선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꾀변을 떠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외주화가 노동자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성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시행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김용균과 하청 노동자는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분노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숙 대표는 “한국서부발전소에서 지난 8년 동안 열두 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원청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3년간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5년 동안 세금 22억 원을 감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었지만 원청도 하청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원청은 법의 보호 속에 이윤을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라는 권고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코로나 19 보다 더 악랄한 보전업체

현대차 울산공장 마스타씨스템 · 성진 너희들은 퇴출이 답이다

현행 근무형태,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근무시간(H)	9.33	9.33	9.33	9.33	9.33	9.33	9.33	65.3
환산시간(H)	9.995	9.995	9.995	9.995	9.995	14.66	14.66	79.925
임금환산(원)	85.858	85.858	85.858	85.858	85.858	125.930	125.930	681.150

↓↓

주 52시간 근무형태,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근무시간(H)	무급	8	8	8	8	8	8	52
환산시간(H)	휴일	8	8	8	8	8	8	64
임금환산(원)	0	68.720	68.720	68.720	68.720	137.440	137.440	549.76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전 하청사들이 주 52시간 시행을 핑계로 일방 임금삭감을 선포하고 있다. 보전하청 업체들은 현대차로부터 인가도급에 따른 기성을 받고 있다. 물량 도급 방식의 기성산출 근거인 도급물량과는 전혀 무관하다.

보전 하청사들은 현대차에서 삭감 없이 기성을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업무를 52시간에 똑같이 소화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측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보전하청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노동착취를 참을 수 없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 = 궤변 (詭辯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말, 얼른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 거짓 추론)

현재 보전하청업무는 기존 사내 1차 업체에서 일방 외주화 과정을 거치며,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여제도·성과금·하계휴가비·통상수당 폐지 등

각종 수당이 다 사라졌다. 현재 보전하청 노동자들은 ‘쌍’ 시급만 받을 수 밖에 없다. 업체들이 주말 근무를 강요하니 쉬지 못하고 출근하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업체들은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131,390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일 년에 6백83만2천 280 원이 깎인다.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범죄자 집단

지난 2018년 성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성진의 사장, 이사, 소장 등 관리자들은 지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성진 사측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은 다섯 건이나 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만 두 건이다.

성진은 부당징계 건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투는 중인 지회 대의원이 파업 지침을 받은 사실을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 선동으로 노동자와 공익위원들을 기만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단협 40조 5항에 ‘하도급 또는 용역업체가 조합의 지적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 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확인 후 재계약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현대차지부 단협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퇴출해서, 보전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결 투쟁으로 함께 쟁취하자

원청출신 낙하산 보전업체 바지사장들은 노동자들의 고향로 살찌고 있다. 더욱이 주 52시간을 빌미로 고용불안과 노동 착취를 더욱 확대하며 하청노동자를 조롱하고 있다. 보전하청 조합원들은 ‘주 52시간 임금보전’ 을 쟁취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청·하청 노동자 동지들의 많은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거짓과 배신의 동아 · 조선일보 끝낼 시간”

동아일보 창간 100년, 적폐 언론 청산 다짐 ... 민주노총, “재벌 위한 왜곡 보도, 끝까지 싸운다”



민주노총과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 사건 관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시민행동은 4월 8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동아일보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희생당한 동아투위가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를 대표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 채널A,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돈을 벌려는 재벌들을 위해 민주노총에 대해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적폐 언론들의 왜곡·편파 보도에 맞서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동아일보에 ‘박

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언론인들이 대량 해직된 것이 사실이며, 국가와 동아일보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 보고서를 통해 1975년 동아일보의 언론인 대량 해고 사건을 ‘언론인 대량 해임은 유신 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결론을 냈다.

동아일보는 진실화해위 판결에 불복하며 ‘당시 대량 해직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이 아니라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과 상고법원 설치를 거래하던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에게 잘 보이려는 듯 동아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진실화해위원회 판결을 뒤집었다. 동아일보는 당시 자유언론운동을 사주와 간부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동아일보의 주장은 완전

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발행한 <1970년~1980년 동아일보사사권>을 보면 1974년(4천687만 원)과 1975년(1억2천817만 원)에 흑자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량해직 이듬해인 1976년에 순이익은 두 배 늘어 2억4천191만 원에 달했다.

시민행동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해고된 항일 기자들은 해방을 맞이하고도 복직하지 못했다. 1975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기자들도 복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언론의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규탄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동아일보 1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자랑은 자유언론수호투쟁”이라며 “이제라도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 반민족, 반민중, 반동일의 역사를 사죄하라”라고 꾸짖었다.